

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
-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. (안제2조제1항)
- 나. 공개방법은 인터넷·일간신문·시공보·지역신문·지역유선방송·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. (안제3조)
- 다.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며,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 (안제4조·제5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대기·오염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개규정은 없으나 국무총리 지시사항(제1999-19호)중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단속결과 조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일부사업장에서의

이의제기시 대응방안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시민의 시정 참여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오염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단속결과 조치사항을 인터넷외 5종에 공개하여,
- 자의적인 단속·처벌을 예방하고 잘못된 조치·불이행등에 대하여 시민의 고발을 유도하여 부패를 방지하고,
-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친화적 이미지에 관심을 갖도록하여 환경오염을 근절시키고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